

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기부자  
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5 월 8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197호

붙임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97호

##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구성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<u>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금전 또는 현물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.</p> <p>제6조(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</u>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「<u>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 「<u>양성평등기본법</u>」에 따라 <u>성별균형을 고려하여</u>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